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43
----------	-------

발의연월일 : 2026. 9. 29.

발 의 자 : 문대림 · 김 윤 · 김영배
서삼석 · 김성범 · 주철현
김준혁 · 송옥주 · 朴芝源
김동아 · 김영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당에 설치된 정책연구소만으로는 각 지역의 산업구조, 인구·복지 여건, 교통·주거 문제 및 지방 소멸 위기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일부 시·도당은 자체적인 정책연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설치·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전문 연구인력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굴·개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등).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을 “정책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정책연구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로 한다.

- ② 정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u>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u> 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① ----- ----- ----- ----- ----- ----- ----- <u>정책연구소를</u> -----.
<u><신 설></u>	② 정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u>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② 국가는 <u>정책연구소의</u>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u> ----- -----.